





## 제 6 장 기타 사례

### ❖ 사 례 32

귀순자인 신청인이 일부 탈북자들처럼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사 건** 2014서울조정853·889 정정·손배청구 (채널A)  
2014서울조정854 정정청구 (인터넷 채널A)
- 신 청 인** 박○○
- 피신청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인터넷 채널A)
-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 접 수 일** 2014. 6. 12.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 토크프로그램에서 남한 정부가 신청인을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신청인 어머니의 영상을 담은 북한의 제작 대남 비방 방송을 소개하자, 게스트로 나온 탈북 여성 중 한 명이 그 어머니도 귀순여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탈북 이후 한 번도 자신의 어머니와 연락하거나 돈을 보낸 사실이 없는데도, 자신의 실명이 노출되고 또 마치 북한에 있는 어머니에게 돈을 보낸 것처럼 보여져 어머니의 신변이 위태롭게 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되므로 이에 응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은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금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조정대상보도

- **채널 A -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2014년 5월 18일자 23:15, 인터넷 채널A 5월 18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 **내 용** - 〈전략〉

- ▷ 여MC : 제가 대남 방송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 ▷ 북한주민 어머니 : 이 살점이 뭉쳐 떨어져 나간들 이렇게야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막으로 박○○의 어머니 김○○, '탈북자 딸을 둔 어머니의 인터뷰'라고 표시)

- ▷ 게스트 A : 하하하 아~ 나중엔 가지가지 한다.
- ▷ 북한주민 어머니 : 벌써 한 달이 썩 지나갔습니다. 이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못살던 우리 딸인데 글썽 이일을 어찌면 좋습니까? (인터뷰영상을 보며 방송참가자들은 킥킥 웃고 있음)
- ▷ 북한주민 어머니 : 귀순인지 귀신인지 듣기에도 끔찍한 거짓말을 꾸며가며 엄마의 품에서 외동딸을 빼앗아 내려는 남조선 괴뢰도당은 과연 사람입니까?
- ▷ 여MC : 스스로 온기 아니고 우리가 빼셨다구~
- ▷ 북한주민 어머니 : 짐승도 제 새끼를 빼앗아 가려면 사생결단 하는데 정을 가진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자막에 '너무나 어색한 연기'라고 표시)
- ▷ 북한주민 어머니 : 그놈들이 만약 내 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다친다면 절대로 용서치 않겠습니다. (말풍선 '드디어 끝났다.'라고 표시)

- ▷ 남MC : 저 옆에 분은 탈북자?
- ▷ 여MC : 아니 탈북이 아니고~ 개네 들이 남한에서 데려 갔다~ 납치해갔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연기력이 너무 떨어지네...
- ▷ 게스트 B씨 : 진짜로 딸을 잃어버린 사람인지, 연기잔지 궁금해요
- ▷ 탈북녀 A씨 : 아니 엄마는 맞아요. 엄마는 맞는데 딸은 귀순이 아니고 탈북을 했죠, ‘스스로 간 것이 아니고, 꼬임 수에 넘어서 갔다’ 이렇게 지금 짜임수를 맞춘 거죠.



- ▷ 탈북녀 B씨 :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서 선전대 활동을 화술을 조금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며 자식한테서 지금 돈도 받는 엄마예요, 보니까. 근데 강압적으로 이용을 당한 거예요. 저기 나와서.

〈후략〉

###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채널 A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014서울조정 853)
2. 피신청인은 인터넷 채널A 홈페이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섹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126회)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014서울조정854)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북에 있는 어머니가 딸에게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5월 18일 프로그램에서 탈북자 어머니의 인터뷰내용을 방영하면서 어머니가 연기를 너무 못한다느니, 딸은 귀순이 아니라 탈북을 했다고 하였고 특히 촬영참가자 김○○씨는 “자식한테서 돈도 받는엄마예요” 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도에서 딸로 언급된 당사자는 탈북자가 아니고 귀순자이며 어머니와 헤어진 후 아직까지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해본적이 없으며 돈을 보낸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2014서울조정889)

###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 조정성립사항

## 1. 보도문

가. 제목 : “귀순한 딸에게서 돈 받는 어머니”는 사실과 다릅니다.

나. 본문 :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자 “이만갑”에서 귀순한 딸을 둔 북한의 어머니 얘기를 소개하던 중 일부 출연자들이 ‘남한의 자식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에 귀순한 딸 박○○씨는 북한의 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돈을 보낸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2014년 8월 17일자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의 육성으로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 자막으로 6초간 표시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4. 8. 11.(월)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체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에서 제3항까지를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 담당 PD 등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4. 7. 28.

##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채널 A -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 『“귀순한 딸에게서 돈 받는 어머니”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7일자)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 제 4 부

## 주요 시정권고 사례

